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 아동·청소년 퍼실리테이터 그룹 지원 지원신청서 작성 안내

· 아래 내용 및 공고문의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양식

- 지원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한글파일(hwp)로 **최대 A4 18매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만 작성바랍니다.**
- 본문의 글꼴은 맑은고딕 11포인트로 작성, 줄간격은 160%로 작성
- 파란 안내글씨는 삭제하고, 검정색으로 작성하여 제출
- 본 파일명은 **"지원신청서_퍼실리테이터 그룹 지원_단체명"**으로 제출
- 사진 파일을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 첨부(사진 파일 크기 조정 무료 프로그램 사용)
- 기본 양식을 준수하되, 추가 기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식 일부 변경 가능
예) 표로 되어있는 부분은 내용이 추가될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유의사항

- 본 지원신청서는 심의자료로 활용되오니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충실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 본 사업의 지원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자	제출자료	제출방법
필수	지원 신청자 전원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첨부파일 면에 등록 -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워드파일(docx) 중 택 1 - 파일명 : 지원신청서_퍼실리테이터 그룹 지원_단체명 ※ 지원신청서 미제출, 양식 미준수 시 행정결격(심사대상 제외)
해당 자에 한함	국내거 주 외국인	예술 활동 증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발급된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를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내 첨부 파일면에 등록 - 파일형식 : PDF - 파일명 : 예술인활동증명_퍼실리테이터 그룹 지원_단체명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에 한함(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등 지원신청 관련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 : 예술전문단체 및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 - 예술전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삼아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조직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 지원사업의 모더레이팅(모니터링, 네트워킹, 성과공유회 등) 역량을 갖춘 예술전문단체 · 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 지원 사업의 행정지원(교부, 정산, 문의대응 등) 역량을 갖춘 예술전문단체

- 지원심의 당시의 지원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수준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 향후 사업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예산편성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지원신청액 작성안내**

- 2021년 아동·청소년 퍼실리테이터 그룹 지원은 **자부담(자체부담경비)**으로 의무편성 제외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보조사업자 자율편성가능 예산항목>**에 한하며, 예산과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 예산편성의 적절성은 심의에서 평가됨)
- 본 사업에 선정된 퍼실리테이터 그룹(단체)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를 수행합니다.
- 예산계획 작성 시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신청개요의 예산(총 소요액과 지원신청액 모두)과 지원신청서의 예산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시) 총 소요액 10,000,000원, 신청액 10,000,000원 입력
-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조사업 수행 시 표준(서면)계약서 등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 서면 체결 이행 의무)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 받는 경우 예술인고용보험 가입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 : <http://artinsure.kawf.kr/>)
- 미투(Me Too)운동으로 대변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을 확인(체크) 후 세부 신청개요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준수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http://www.kawf.kr/social/sub12.do>)을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심층적인 성희롱·성폭력 워크샵(ex참여형 교육 등)을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보조금 내 편성이 가능합니다.
- 창작활동 유지를 위한 영유아 자녀를 둔 예술인에게 보조금 내 돌봄 비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 돌봄비는 지원신청 시 사전 예산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부 신청 시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통해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80시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1시간당 1만원 기준)
- 선정된 단체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회계검사를 추진하고, 최종 선정된 예술단체는 예술위원회와 지원협약 체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기초예술다양성증진사업 담당자
- 문의전화 : 061-900-2163 / 061-900-2167 - Email : diversity@arko.or.kr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
[유형②] 아동·청소년 퍼실리테이터 그룹 지원

단체 일반현황

■ 신청사업유형	(유형2) 아동청소년 퍼실리테이터 그룹 지원
■ 신청단체명(대표자명)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사업담당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담당자명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소재지(주소)	☞ 신청당일 기준으로 소재지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단체 소개	☞ 신청단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세요.(운영방향 및 비전) 2줄 이내로 압축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신청사업 내용

■ 신청사업명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입력하는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사업예산	50,000,000원 ☞ 본 사업은 단일 유형 5천만 원 정액지원입니다.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지원신청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관리, 타기관 중복지원 검토,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사업개요

- 평가항목
[사업목적 이해도 30%]
○ 필수이행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메모:4] arko 2021-05-06 17:15
★ 작성 시 공고문의 사업내용
참고

구 분		내 용
모더 레이팅	성과관리	↓ 신청 사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사업 준비 및 전개과정, 현장모니터링, 성과 공유회 및 확산 등 신청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추진방법을 사업 특성에 맞게 작성해 주십시오. 이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2번 세부추진계획에 작성바랍니다.
	성과공유	
	모니터링 /네트워킹	
행정 지원	교부정산	
	문의대응	
기대하는 사업성과		☞ 사업 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성과를 작성바랍니다.
향후계획		☞ 사업 진행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 작성바랍니다.

2

사업추진계획

○ 평가항목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예산 편성항목과 단가 등이 제시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주요 참여인력 현황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핵심 내용을 작성 바랍니다.

연번	성명	역할	현직 / 주요경력	확정여부	비고
1	홍길동	기획자	○ ○	확정 or 진행중	

□ 세부 실행계획

☞ 사업개요에서 작성하신 필수이행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기간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추진일정

일정	추진 계획	세부 내용	비고
2021. 7	○	○	
2021. 8	○	○	
2021. 9	○	○	
2021. 10	○	○	
2021. 11	○	○	
2021. 12	○	○	

□ 예산집행계획

※ 예산자율편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보조사업자 자율편성가능 예산항목>에 한하며, 예산과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단, 예산편성의 적절성은 심의 과정 내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자부담(자체부담경비) 의무편성 제외 사업입니다.
- 예산계획 작성 시 반드시 총소요액과 지원신청액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기재한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를 수행합니다.

[참고1] 퍼실리테이터 그룹 지원 규모

정액지원(단일유형)
5천만 원 (총 1개 단체 선정 예정)

(단위: 원)

지원신청액	50,000,000
-------	------------

(단위 : 원)

비목	세목	산출근거	지출예산
인건비	기타직보수	○기획인력 1,000,000원 x 1개월 x 1명	1,000,000
	합 계		1,000,0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스튜디오 대관료 1,000,000원 x 1식	1,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고용보험료(사업자 부담금)	
합 계			
총 계			50,000,000

☞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최근 3년간(2018~2020) 예술활동현황

- 평가항목
- [사업수행 역량 40%]
- 신청자의 기존 활동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최근 3년간(2018~ 2020) 예술 활동 현황을 적어주세요

사업명	사업 기간 및 내용	지원 금액(원)	비고
	· 수행기간 : · 수행실적 : (정량적으로 기술)	☞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업의 경우 공란으로 제출	

최근 3년간(2018~2020) 활동 링크

☞ 링크의 하이퍼링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재 바랍니다.

[참고2] 예산편성 관련 가이드라인

■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조세목

비목	세목	내역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조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 보건조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 등 정가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인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 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번호료, 수입료 및 보수 - 속기, 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비목	세목	내역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지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 원천세, 고용보험, 돌봄비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한 세무서 또는 회계검증기관에 문의

[참고 3]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원천세 · 고용보험 · 영유아돌봄비)

원천세	구분	원천징수	비고
	프리랜서 참여자 (배우, 연주자, 스태프 등)	사업소득(3.3%) (지급금액 x 3.3%)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용역 제공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8.8%) (지급금액 x 8.8%)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 용역 제공
	12,500원 이하 기타소득 사례비	0원	금액에 대한 신고 납부
고용 보험	적용 대상		보험료 계산
	일반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월 보수액* x 보험료율(1.6%) ※ 1.6% 중 0.8%는 사업주 부담금, 0.8%는 예술인 부담금 *월평균소득(월단위 계약 시) :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기간 *월평균소득(월단위 계약 x) : (계약금액 ÷ 계약일수) x 3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상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영유아 돌봄비	적용대상	지원범위	비고
	창작활동 유지를 위해 영유아 자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를 둔 참여예술인	1시간당 1만 원 기준 1인당 최대 80시간까지 신청 가능	자문사례비 등 일회성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영유아자녀 돌봄비 1인에게 월 23만 원 이상 돌봄비를 지급할 경우, 사례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필요 ※ 사업정산 시 관련 필요서류 필수 제출		

붙임1

본 사업에서 기존 대비 달라진 내용 및 적용되는 제도

□ 기존 대비 달라진 내용

제도	기존	변경 및 강화
성희롱·성폭력 범죄 행위자(관련자) 지원신청 금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지원 신청하는 프로젝트(보조사업) 참여자 전원 해당) ○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지원신청하는 프로젝트(보조사업) 참여자 전원 해당)
대표자 사례비 책정 가능	○ 보조금 내 대표자 사례비 책정 불가	○ 대표자 사업 내 역할 고려하여 보조금 내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본인 사례비(대표자) 책정 가능 (2019년부터 적용)
성희롱·성폭력 예방제도 강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권익보호 교육 무료 교육 수강 안내	○ 심층심화적 성희롱·성폭력 교육 및 워크샵 보조금 내 추가편성 가능 (시범도입)

□ 21년 신규 적용 제도

[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의무화(해당 시)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무
- 단체(개인)은 참여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금 보조금 내 편성

[2]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프로그램 편성 가능

- 장애인 참여 증진을 위한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활동 촉진 지원 ※ [붙임 2] 참고
-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운영계획 신청자는 장애인 친화형 프로그램을 위한 소요 비용 추가 편성 가능

[3] 영유아 자녀 돌봄비 편성 가능

- 창작활동 유지를 위해 영유아 자녀를 둔 예술인 돌봄비용 보조금 편성 가능(1인당 최대 80시간/까지 산정가능(1시간당 1만원)
- 영유아 자녀 돌봄비는 지원신청 시 사전 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부 신청 시 반영하고자 할 때 변경신청서를 통해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영유아 :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4] 상해보험 가입 편성 가능

-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단체(개인) 상해보험비 보조금 내 편성 가능

[5]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 신청 확대

- 21년도 정시공모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 신청 가능 (*지원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발급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제출단계에 첨부 시 지원신청 가능

1 사업 수행에 관한 서약서(필수)

※ 신청자는 본 사업의 신청 접수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음합니다. 단, 서류 제출 시 아래 서약서에 제출 날짜(일) 및 인적사항(단체, 대표자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수행에 관한 서약서

「2021년 아동·청소년 퍼실리테이터 그룹 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는 이 사업 내용(유형 1에 대한 모더레이팅, 성과공유회 및 행정 지원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저작권, 계약 등 기타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 및 지원 신청서상 내용에 대한 허위기재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5월 일

단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생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성희롱·성폭력범죄 혐의에 관한 서약서

「2021년 아동·청소년 퍼실리테이터 그룹 지원」신청단체는 본 사업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 및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지원신청하는 프로젝트(보조사업) 참여자 전원 해당)는 사업 참여 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약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자(단체)는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지원신청하는 프로젝트(보조사업) 참여자 전원 해당)하며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1년 5월 일

단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생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